

다이렉트운전자보험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자살, 자해 등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별도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본인의 동의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Q)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담보별 보상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보상담보의 경우 각각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실손보상담보의 경우 비례보상됩니다.
- 정액보상담보: 사망담보, 후유장해담보 등
- 실손보상담보: 실손의료비담보, 배상책임담보 등

Q) 보험기간 중 계약의 변경 가능여부?

A)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종목,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종류는?

A)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나 운전여부의 변경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① 가입연령: 18세~75세
-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재물)의 특성, 피보험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등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리 적용됩니다.
- ②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00만원까지)
- ③ 보험기간: 1년, 3년
- ④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 ⑤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⑥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자는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 해야 하며, 해당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위임)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 장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본 계약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100%)
선택 계약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500만원 한도 로 보장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 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 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일반상해 골절화상 진단(치	골절 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 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단, 치아의 파절은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화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화상	(1사고당)

선택 계약	아파절제 외)	진단비	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골절화상 수술	골절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약관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보험 금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보험 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3~100%)
	일상생활강력 범죄발생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중환자실입원일당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중환자실 입원일로부터 180일 까지의 중환자실 입원 시 :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 입원일당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동승자 포함)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피해자 1인당> 1. 피해자 사망시: 3천만원 2. 피해자 42일~69일 진단시: 1천만원 한도 3. 피해자 70일~139일 진단시: 2천만원 한도 4. 피해자 140일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원한도	

선택 계약		<p>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p> <p>(1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p>	
	운전중사고벌금	<p>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p>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p>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제외 ※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p>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동차 사고부상	<p>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배법^{주2}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p>	<p>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10만원 ~ 1000만원</p>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p>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p>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p>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p>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실화(대물) 배상책임	<p>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p>	최고 3억
	재산손해보장	<p>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파열, 붕괴)등으로 인하여 가재 및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보상</p>	보험가입금액 한도
	└건물위험	<p>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인</p>	

부보장 추가	건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가재 및 건물(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 부보장 추가	재산손해보장에도 불구하고, 건물(보험의 목적)에 부착된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고 300만원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재도난위험	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보상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주2)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③ 피보험자의 질병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⑥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⑦ 이 상품의 「운전중사고별금」,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및 재물손해 관련,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⑧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해당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예시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보험료 예시

(단위 : 원)

구 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1,027
선택계약	교통상해입원일당	2만	11,733
	일반상해골절화상수술	50만	
	일반상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	20만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7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0만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100만	
	자동차사고부상	1,000만	
	운전중사고벌금	2,000만	
	운전중변호사선임비용	500만	
	자동차사고성형수술	500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3,000만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재물손해보장	5,000만	
	가재도난위험	300만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보 험 료 합 계			12,760

※ 보험료산출기준 : 남자, 자가용운전자, 개인형, 아파트, 보험기간 3년, 월납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